

정비 보수 견적 / 계약서

고객명/ 주소:

㈜아이피에스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33번지

우편번호: 450-090

계약담당자:

이 주 희 님 / 설계팀

Tel: 031-659-2249

Fax: 031-655-7115

견적발행일: 2003. 5. 04

정비보수계약 문의처:

IT사업부 김 병 익 차장

Tel: 02-786-0727

Fax: 02-786-0708

서비스제품

계약기간

월간계약금액

소프트웨어방문

2003.8.1 ~ 2004.7.31

₩ 2,580,000

월별 계약금액 합계(부가가치세 별도):

₩2,580,000

비고 : 1. 본 견적가격은 발행일로부터 2003-07-31까지 유효합니다.

2. 서비스 문의: 02-786-0727

3. 유지보수 계약금액의 결재조건은 현금입니다.

>6 363

주식회사 프로써트 대표

직 위: 대표이사

서명날인:

안 성 묵

정비 보수 지원 계약서

계약서 번호 : 200307020PVS015 발 효 일 : 2003년 08월 01일

제 1 조 : 계약의 개요

프로써트주식회사(이하 "프로써트"이라 함)는 고객의 주문에 의 거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정비 보수 지원을 한다. 정비 보수 지 원의 자세한 내역은 본 계약에 첨부 또는 추가된 "정비 보수 지 원 내역"에 따른다. 본 계약은 어느 일방에 의하여 파기될 때까 지 유효하다.

제 2 조 : 정비 보수 지원 대상

프로써트가 공급하고 프로써트가 본 계약의 계약 장비로 포함하 도록 합의한 타사 제품도 정비 보수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 정비 보수 요청

- 가. 고객은 본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계약 장비의 정비 보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본 계약상의 계약 장비를 합의하에 추 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 나. 고객이 장비를 본 계약하의 계약 장비로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계약 번호 정비 보수 개시일, 장비 번호, 정비보수 료 지불일등 필요한 사항을 프로써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 정비 보수 조건

프로써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정비 보수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가. 운행 잘못으로 인한 고장
- 나. 지진, 폭풍, 홍수 등의 천재 지변의 발생시
- 다. 군중의 소요, 전쟁, 핵 폭발및 불가항력적 사태의 경우
- 라. 프로써트 이외의 제 3 자에 의한 수리, 보수, 이전, 교정 등에 의한 고장
- 마. 물리적 충격, 전기 충격, 사고, 화재, 누수, 고온, 고습도 등 정상적인 사용이 아닌 이유로 인한 고장
- 바. 기타 프로써트의 기준에 부합 되지 않는 환경 조건으로 인 한 고장

상기의 이유로 인한 고장의 정비 보수에 대하여 고객은 본 계약이 정한 정비보수료와는 별도로 프로써트에 소정의 정비 보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5 조 : 계약외 사항

다음의 사항은 본 계약상 프로써트의 책임이 아니다. (1) 운전용 비품, 소모품의 공급, (2) 기기의 도장및 도장에 필요한 자재, (3) 기기 외부의 전기 공사, (4) 본 계약상에 명시 되지 않은 부착물, 운전 보조품들의 정비 보수 작업, (5) 기타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않은 지원.

제 6 조 : 계약 기간

- 가. 본 계약은 계약에 명시된 발효일로 부터 유효하며 쌍방증 어느 일방의 해지로 효력을 상실한다.
- 나. 고객은 본 계약에 의한 계약 장비를 30일전에 프로써트에 서면 통보하여 취소할 수 있다. 프로써트는 60일 이전에 고객에게 서면 통보로 취소할 수 있으나, 계약 장비로 등 록된 후 12 개월 이내에는 취소할수 없다.

제 7 조 : 정비 보수에 대한 보증

- 가. 본 계약상의 하드웨어 정비 보수에 대한 보증은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여 정상적인 가동 상태로 복구하는 것에 한한다. 프로써트의 소프트웨어, 상담, 교육및 자료 서비스에 대한 의무는 고객이 요청한 사항을 계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 한한다.
- 나. 본 계약에 의한 보증은 (가)항의 사항에 한하며, 다른 어떤 서면으로나 구두의 보증은 전혀 없다. 또한 프로써트는 특수 목적에의 적용성이나 상품으로서의 매매 가능도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 조 : 정비보수료

- 가. 본 계약에 의하여 규정된 범위 이외의 정비 보수나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정비 보수에 대하여는 프로써트의 정비 보수료 기준에 의거 본 계약과 별도로 정비보수료를 청구한다.
- 나. 월간 정비보수료의 적용기간과 금액은 별첨한 정비보수 견 적서에 따른다.

제 9 조 : 대금 청구

- 가. 본 계약에 의한 정비 보수료는 매월 30일자로 청구한다.
- 나. 별도로 프로써트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고객은 본 계약에 의거 청구된 정비보수료를 청구 후 30일 이내에 지 불한다.
- 다. 정비보수료는 제 9 조 (나)항에 명시된 방법으로 지불해야 하며, 고객이 정비보수료를 30일 이상 연체할 때 프로써트 는 매달 1푼의 연체료를 부가할 수 있다.

제 10 조 : 적용의 우선

만약 본 계약과 본 계약에 추가 첨부된 사항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본 계약의 내용에 우선한다. 고객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프로써트가 이를 시행하더라도 이는 프로써트가 본 계약에 의하여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제 11 조 : 기타

- 가.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측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되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 나.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쌍방은 본 계약상의 정비보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하였을 경우 고객의 주소지 관할 민사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합의한다.
- 다. 프로써트는 고객이 정비보수료의 지불을 상당 기간동안 지 연할 경우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보한 후 정비보수를 중단 할 수 있다.
- 라. 대한민국 상법상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쌍방증 어느 일 방이 채무이행 불능상태, 도산상태가 되거나, 파산선고 중 이거나, 재산의 억류 상태가 될 경우 상대방은 본 계약상 의 의무를 취소할 수도 있다.
- 마. 프로써트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 바. 타이핑 또는 기록상의 오기는 정정함으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사. 고객은 프로써트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한 정보및 자료를 프로써트의 승인없이 타업체 또는 타국에 제공하지 않는다.

제 12 조 : 보상및 책임의 한계

본 계약하의 정비보수와 관련하여 프로써트의 작업및 정비보수 부품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신체상의 상해나 재산상의 손실 은 관할 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상하며, 이 경우 직접 원 인이 아닌 매출 손실이나 기대 이익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 13 조 : 정비 보수 내역

- 가. 본 계약에 의하여 일차로 적용할 "정비보수내역"은 첨부된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본 계약과 동일한 효 력이 있다. 프로써트는 새로운 정비보수 대상에 대하여 새 로운 "정비보수내역"을 제안할 것이며, 고객이 동 제안에 동의하면 그 제안은 본 계약의 일부로 유효하다.
- 나. 프로써트는 새로운 "정비 보수 내역"을 적용 60일 전에 고 객에게 제시하여 교정할 수 있으며, 프로써트의 동의에 의 하여 고객은 기존 내역과 새로운 내역중 택일할 수 있다.

정비보수내역 프로써트 소프트웨어 방문지원 서비스

프로써트 서비스는 본 정비보수 내역의 약정과 프로써트 정비보수 지원 계약서의 규정에 따른다.

I. 제공되는 서비스

가. 담당지원대표

프로써트는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가 고객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책임을 맡은 한명의 지원대표 를 선정한다.

나. 지원관리 검토회의

선정된 지원대표는 정기적으로 프로써트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사용을 의논하고, 현재 발생하는 문제의 진행사항을 검토하며 프로써트 제품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지원 관리 검토회의를 주선한다. 연간 지원관리 검토회의의 회수는 시스템 종류에따라 결정된다.

다. 소프트웨어 소개 계획

새로이 소개된 주요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이전에, 지원대표와 고객은 신규 소프트웨어의 특징, 장점, 변화등에 대한 사항및 그러한 변화들이 고객의 특정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검토한다. 지원대표와 고객은 함께 노력하여, 고객의 시스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규 소프트웨어 설치 시행 계획을 마련할 수도 있다.

라. 전화 지원

아래에 서술된 지원 가능 시간 동안 고객 시스템 관리자, 혹은 지정된 대리인은 시스템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하여 프로써트에 전화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프로써트는 소프트웨어 제품 사용에 관하여 고객을 지원하며, 문제의 요인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공한다. 전화 문의 접수후 그에 대한 응답까지의 최대 소요 시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4 시간 이내로 한다.

전화지원 가능시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프로써트 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마. 고객 방문 지원

프로써트가 전화상으로 문제해결을 못하는 경우 프로써트의 지원절차를 통하여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일단 고객을 방문하면 지원대표는 문제해결의 완료나 또는 납득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을 제공한다. 프로써트가 다른 추가 자원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방문지원은 일시 중단되며 이러한 추가 자원의 사용이 가능하게 될 때, 지원을 재개한다. 방문지원 시간은 프로써트 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다.

바. 소프트웨어 문제 통보

만약 이미 설치된 프로써트의 소프트웨어 혹은 갱신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하면, 고객은 프로써트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지원요청 을 통보할 수 있다. 통보된 모든 문제에 대한 최종 방안 결정은 프로써트가 한다.

중대한 소프트웨어 문제는 고객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대로 프로 써트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고객에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 면 오브젝트코드 변경방법 (Patch)이 있으면 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사. 최신 정보자료의 사용권 및 복제권

고객은 시스템에 대한 프로써트 소프트웨어 최신정보자료와 패치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Ⅱ. 서비스 제한 사항

가. 하드웨어및 네트워크지원 서비스

적절한 하드웨어및 네트워크지원 서비스 계약이 맺어있지 않은 제품들에 대하여 하드웨어 혹은 네트워크 관련된 문제가 포함된 어떠한 정비보수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고객은 프로써트가 별도로 정한 표준 서비스요율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 버젼

프로써트가 제공하는 계약지원 서비스는 최신 소프트웨어 버젼이나 바로 그 이전의 버젼에 한하여 가능하며, 또한 프로써트가 규정한 시스템 구성의 일부로 포함된 하드웨어와 함께 사용되어질때만 가능하다.

다. 예외 조항

프로써트 서비스는 프로그램 개발, 코딩, 코딩문제의 해결, 실행 지원 혹은 하드웨어의 이상기능 등의 문제에 대한 지원은 포함하 지 않는다.

라. 데이타 복구

데이타 손실 원인에 관계 없이 데이타 복구에 대한 서비스는 프로 써트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결격제품

서비스는 적격제품에 대하여 제공된다. 프로써트에 의하여 공급 되지 않거나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제품들및 고객이 프로써트의 기술적 개선 서비스를 원치 않는 제품들은 결격제품으로 간주한다. 고객은 프로써트가 적격제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결격제품들을 따로 분리할 책임이 있다. 만일 결격제품들로 인하여 서비스의 수행이 어렵거나 혹은 방해를 받을 때, 프로써트의 추가된 노력에 대하여 고객은 프로써트가 별도로 정한 표준서비스요율에 의하여,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Ⅲ. 전제 조건

- 가. 적절한 프로써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동등한 정도의 프로써트 장비 사용의 경험을 가진 시스템 관리자, 혹은 지정 대리인이 프로써트 협의 상대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 나. 프로써트가 원활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은 시스 템 근처에 음성 통신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V. 고객의 의무사항

가. 개정수준

고객은 모든 관련된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 젼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용방식

고객은 프로써트가 프로써트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의 정보 및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 운영절차

고객은 제품에 대한 프로써트 운영지침서에 명시된 일상적인 운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라. 비밀정보

고객은 소유권 및 비밀정보의 보안을 책임진다.

마. 고객대표

프로써트 고객방문지원 및 전화를 통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때에는 반드시 한명의 고객대표가 현장에 참석하여야 한다.

V. 소프트웨어 면허 및 복제권

- 가. 프로써트는 본 서비스에 의거하여 고객의 소프트웨어 면허에 적용된다. 동일한 프로써트 소프트웨어 면허규정에 따라서 한 대의 컴퓨터에 프로써트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의 최신판 및 부 수물을 사용할 권리가 고객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 나. 고객은 프로써트 소프트웨어 면허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이 소프트웨어 최신판 혹은 부수물에 대한 하등의 권리, 자격, 이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인정한다.
- 다. 고객은 고객이 복제한 소프트웨어 최신판 및 부수물 위에 복제권 및 상호 표시를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는 것에 동의한다.

견 적 서

수 신 : 이 주 희 대리님 / ㈜아이피에스

참 조 :

일 자: 2003년 05월 19일

Pro sert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 프로써트 IT사업부 정 충구 부장 Tel:02-786-0727,Fax:02-786-0708

계약기간: 2003년 8월 1일 ~ 2004년 7월 31일

월간유지보수료 2,580,000 원(VAT 별도)

(단위 : 원)

No.	P/N	Description	Q'ty	List Price	Amount	Proposal price
		< Return To Support (RTS) >				
1	PVM	프로써트 방문지원	1	140,000	140,000	140,000
2	C200A	Account Support for Modeling	8	2,607,000	20,856,000	12,514,000
3	C220A	Account Support for Assembly	4	344,900	1,379,600	828,000
4	C100A	Account Support for Drafting	13	1,116,000	14,508,000	8,705,000
5	C210A	Account Support for Model Manager	13	435,700	5,664,100	3,398,000
6	C430A	Account Support for BOM Manager	13	689,800	8,967,400	5,380,000
					Total :	30,965,000
\square						
	년간 유지보수료 합계 (1년)					

주1) 견적유효기간 : 2003년 7월 31일까지

구매자 상호:

본인 또는 본사는 이 견적서상의 가격및 각종 부가조건들을 수용하고 이 견적서를 귀사에 대한 공식발주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